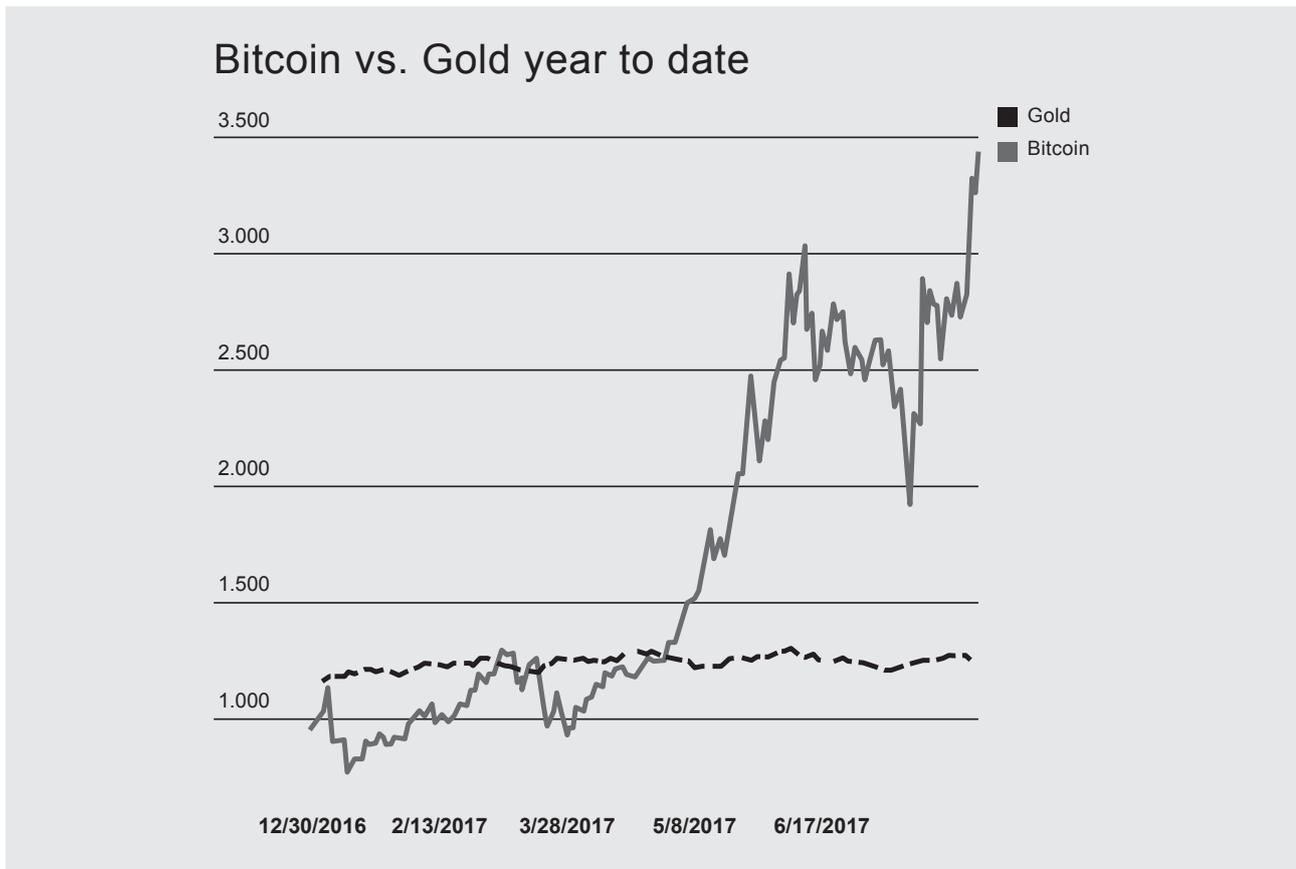


I. 들어가는 말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앙은행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디지털 화폐²⁴⁾가 발행되고 있으며 최근 유통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 ▶ 국내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큰 상위 3개사의 '15.1월~'16.10월중 거래량은 약 1조 5,064억원으로 '15년 대비 '16년 월평균 거래량이 약 6% 증가²⁵⁾
 - ▶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과 폭락 양상을 보이면서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최초로 비트코인이 거래된 2010년 4월 14센트였던 1비트코인의 가치가 2011년 5월 27달러, 2013년 11월 1200 달러로 급상승 후 2015년 200~300 달러로 폭락함
 - ▶ 2017년 1월 1천 달러를 넘어서 비트코인은 5월 2천 달러, 6월 3천 달러를 돌파한 후 1천 달러 가까이 하락하여 6월 15일 기준 2076.16달러로 거래됨

비트코인 가격 추이



Source CoinDesk, FactSet

24)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currency) 등의 용어로도 사용됨

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 11. 16

- ▶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자 각 국의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용 및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 하기에 이르는데 특히 2013년 2월 유럽감독청은 암호화폐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족을 금융소비자들에게 경고했으며, 특히 비트코인 화폐가치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함
-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마약이나 무기 등 불법거래, 테러집단 자금 조달, 돈세탁이나 탈세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준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를 유포한 해커들이 바이러스 해지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FATF)는 권고기준 및 모범지침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의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관련당국의 적절한 대응 및 민간의 방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가상화폐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디지털화폐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화폐 제도화 TF를 추진하여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법제도 도입 및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이 요구됨. 본 보고서는 EU의 가상화폐 논의 및 상황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가상화폐의 일반적 개요 및 이를 둘러싼 법제도적 이슈,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시장현황 및 작동원리에 대한 간략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음

II. 본론

1. 가상화폐 개요 및 유형

-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 또는 공공당국에서 발행하는 법정 통화와는 달리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민간 통화를 의미하며 실물화폐와는 달리 가상환경에서 통용되는 실체가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고도 불리우며, 비트코인 등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어 발행되는 경우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의 용어로도 사용됨

[표 1] 법정통화와 가상통화 비교²⁶⁾

	실물화폐(현금)	전자화폐/선불카드	디지털화폐
법적지위	법률에 근거		민간통화
발행기관	중앙은행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없음
화폐단위	법정통화	법정통화와 동일	독자적인 화폐단위
현금과의 교환 여부	-	발행기관이 교환을 보장	가능하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음
현금과의 교환 가격	-	고정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
자금보호	가능	가능	불가

- ▶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디지털화폐를 민간 개발자에 의해 발행 및 통제되는 규제되지 않은 화폐로써 가상 커뮤니티 회원들 간 통용되는 디지털 머니의 일종이라고 정의함²⁷⁾
- ▶ 유럽은행당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았지만 전자적으로 송금, 거래 등이 가능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이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화폐라고 정의하고 있음²⁸⁾
- 특히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를 법정통화와의 환전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폐쇄형(Closed), 단방향(Uni-directional) 및 양방향(Bidirectional)으로 분류 하고 있는데, 폐쇄형은 법정통화와 디지털화폐 간 환전이 불가하며 가상 환경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화폐로 온라인 게임머니 등이 이에 해당됨
 - ▶ 단방향은 페이스북 Credits, 닌텐도 포인트 등 디지털화폐 발행기관이 정한 환율에 따라 법정통화를 디지털화폐로만 환전할 수 있는 화폐로 실제 물품 구매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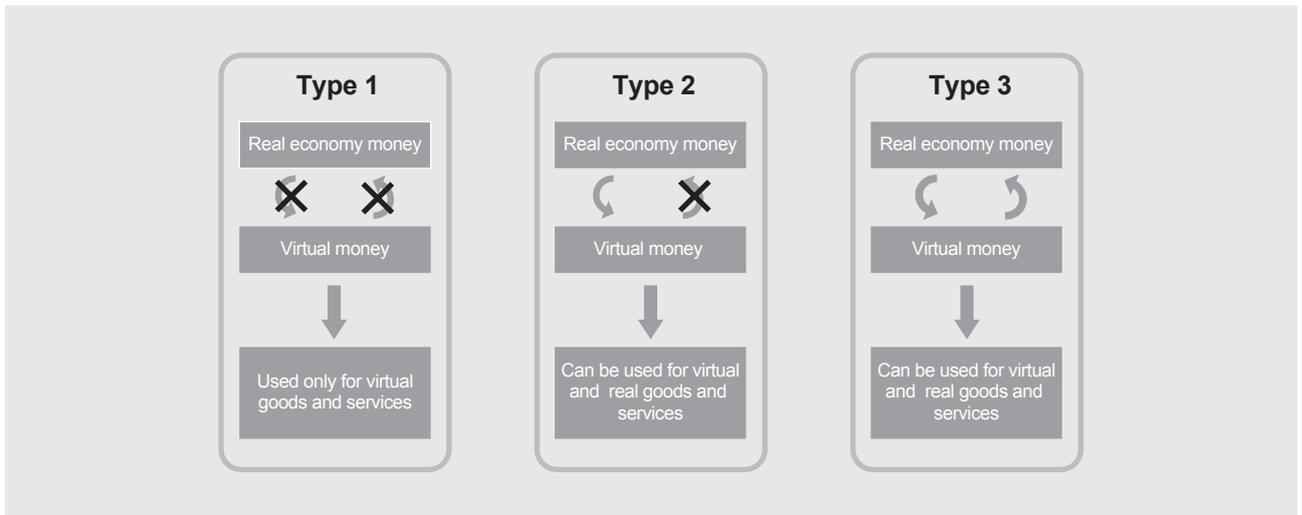
26) 황종모, 한승우,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 2017년, 26면

27) ECB, "Virtual Currency Schemes", 2012, Available at: <https://www.ecb.europa.eu/pub/pdf/other/virtualcurrencyschemes201210en.pdf>

28) EBA,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2014, Available at: <https://www.eba.europa.eu/documents/10180/657547/EBA-Op-2014-08+Opinion+on+Virtual+Currencies.pdf>

- ▶ 양방향은 디지털화폐의 가치에 따라 변동환율이 적용되며 디지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하여 법정통화와 디지털화폐 간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한 화폐로 단방향과 마찬가지로 실제 물품 구매가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 Linden Dollars 등이 있음

[그림 1] ECB의 디지털화폐 분류 유형



자료 Virtual Currency Schemes(European Central Bank)

2. 가상화폐 관련 법제도적 이슈

(1)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

- 가상화폐 관련 법제도적 쟁점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간주할 것인지 유통증권, 자산 등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임
 - ▶ 미국의 경우 일부 주들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함. 2016년 9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여기는 판결을 내림²⁹⁾
 - ▶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구입·매각·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이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여 그간 자산(재화)으로 간주해 오던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하고 있음
 - ▶ EU와 영국은 가상화폐를 화폐 또는 유통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일은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음
 - ▶ 우리나라 국제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도 볼 수 있고 자산(재화)으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공정위 등 일반적인 해석은 재화로 보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 이에 비해 국제적으로는 화폐로 보는 추세가 강한 것으로 여겨짐

29) Aneta Vondráčková,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European Union,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Law, 2016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896911>

(2) 자금세탁 등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거래

- 부분의 디지털화폐의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은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가명 또는 경우에 따라 익명성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익명성은 사업자 관리감독, 법정통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디지털화폐를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의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수 있으며 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로서 가지는 시스템의 특징 상 불법적인 상품을 구매하고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 ▶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익명으로 처리 될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고의 의무가 없기에 조세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는 송금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객확인 의무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제 도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고 있고 통신판매업자는 자금 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 규제는 미비함

(3) 디지털화폐의 세법상 이슈

-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화폐인 디지털화폐가 출현하면서 이러한 디지털화폐를 이용하여 거래 시 세법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 ▶ 가상화폐를 화폐나 무형자산으로 파악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데 대표적으로 일본은 과거 재화로 파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지만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더 이상 8%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 재화로 파악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속하는데, 부가가치세 관련 국제적인 추세는 면제로 가는 방향임

(4) 보안상 위험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고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거래소나 디지털 지급의 보안 문제 등 디지털화폐로서 갖는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음
 - ▶ 보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동일한 화폐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문제는 실소유자가 해당 거래를 유효하게 인증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인지도가 낮은 거래소의 경우 해킹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해킹으로 인한 가상화폐 도난 발생 시,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고 있어서 어떠한 중앙 은행 혹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예금 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사용자들이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3. 비트코인의 현황

(1) 개요 및 시장현황

-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하여 발행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암호화화폐로 기존 실물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 기관의 개입이 없는 화폐 발행 구조를 가지고,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commodity)로서의 가치는 없는 전형적인 명목화폐(fiat money)임³⁰⁾
 - ▶ 비트코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특정 서버 혹은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는 P2P 네트워크 기반 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각종 거래비용을 낮추고,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 및 이체를 가능하게 함
 - ▶ 해외의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의 분산시스템인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을 활용하여 결제 및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임³¹⁾
 - ▶ 전 세계 비트코인 사용자는 2,500만 명을 넘어섰고(2014년 10월 기준), 세계적으로 암호화화폐의 실물 경제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로아컨설팅, 2015)
- 기반 분산시스템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인정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진행 되고 있음. 2014년 비트코인 업종으로 투자받은 기업이 566개에 달하고, 전 세계 비트코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3.35억 달러로 전년대비 250% 증가하는 등 비트코인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투자가 급상승하고 있음.⁸²⁾
 - ▶ 비트코인이 통용되는 상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5년 1월 미국 24개 주에서 인가받은 공인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Coinbase Exchange)가 오픈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고 있음³²⁾
- 비트코인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이나 암호화화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통화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 미국의 뉴욕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자금서비스업(money services businesses)으로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상업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시 ‘비트코인 허가증(Bit License)’을 받도록 하였음³³⁾
 - ▶ 독일의 경우, 재무부가 2013년 8월 비트코인을 ‘계산화폐(unit of account)’로 인정하여 법정화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독일 내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과세가 부과되고 있음(CNBC, 2013. 8. 19)³⁴⁾

30) 전주용,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31) 한국인터넷진흥원, IT, 금융 융합규제 개선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탁과제), 2015, 121면

32) 류한석, 핀테크 산업 트렌드 및 시사점, 디지에코, 2015

33)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의 자료 122면

34)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의 자료 122면

- 현재 해외에서는페이팔과 같은 기존의 지불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비트코인 결제 지원 비즈니스가 등장하였으며,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트코인 이용 거래가 다수의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확산되고 있음
 - ▶ 예를 들어, Dell, MS, Expedia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Apple, Paypal, Baidu, Foodler 등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함
 - ▶ 대형 온라인 상점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한 Overstock의 2014년 비트코인 매출액은 약 300만 달러로 연간 총매출의 약 0.2%를 차지함³⁵⁾
- 한편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가 세계 각국에 개설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BTC China는 2015년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의 34%를 거래하며, 1일 평균 120만 달러 이상의 거래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³⁶⁾
 - ▶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는 비트코인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세계 210만 명의 고객과 38,00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는데 성공함
- 비트코인과 유사한 리플(Ripple), 라이트코인(Litecoin), 네임코인(Namecoin) 등의 암호화화폐 및 거래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암호화화폐 시장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³⁷⁾
-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코리아와 코빗(Korbit) 등에서 비트코인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5만 명 정도가 거래계정인 전자지갑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³⁸⁾
 - ▶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오프라인 상점의 수는 2015년 11월 기준 66개³⁹⁾로, 아직까지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 구매를 위한 비트코인 사용은 미미한 수준임
 - ▶ 하지만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량 기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1위를 차지⁴⁰⁾하는 등 국내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음

(2) 작동원리

- 비트코인은 고도로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점이 특징으로 네트워크 내의 개별 참여자가 직접 상대방과 통신하는 P2P 네트워크(peer to peer network, 동등계층간통신망)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함

35)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의 자료 122면

36) <http://coinmarketcap.com> 참조.

37) <http://coinmarketcap.com>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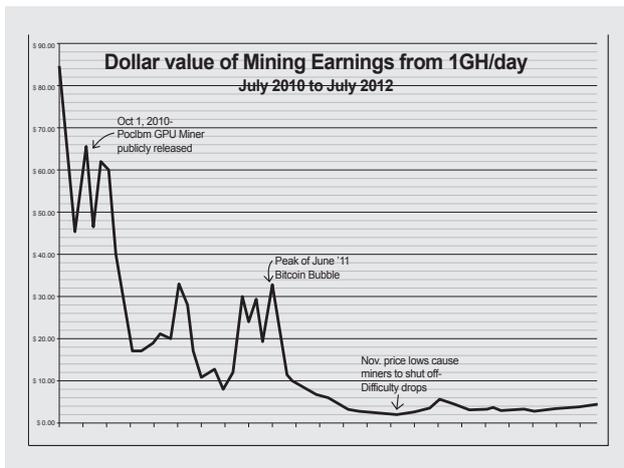
38)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의 자료 123면

39) <http://coinmarketcap.com> 참조.

40) 가상화폐 거래소 랭킹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힐스에 따르면 2017년 6월 28일 오전 9시 37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24시간 총 거래량 1위를 기록함. 빗썸의 24시간 거래량은 총 22만 7,643.89 비트코인으로 시세로 환산할 때 7,100억원에 이르는 금액임 <http://news.danawa.com/view?boardSeq=60&listSeq=3406713#csidxadb9885637ebc06a2650474af386e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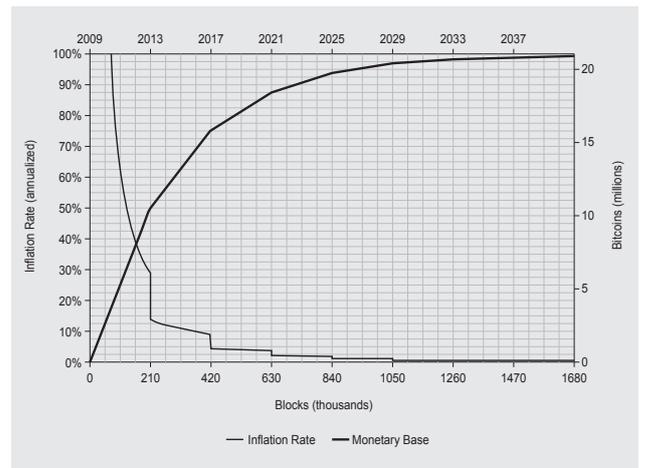
- ▶ 통신을 처리하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으며 네트워크의 각 부분은 네트워크 상의 동등한 참여자들로 구성됨
- ▶ P2P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크상의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네트워크의 용량이 증대된다는 점이며, 이는 사용자가 증가할 때 과부하가 생기고 처리용량이 감소하는 중앙 서버를 통한 네트워크와 대비됨; 한 사용자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처음에는 그와 연결된 사용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각자가 자신과 연결된 사용자와 공유하여 머지않아 네트워크 전체, 즉 전세계로 퍼지게 됨

[그림 2] 비트코인 채굴비용



자료 motherboard.vice.com

[그림 3] 비트코인 발행물량 및 인플레이션



자료 bitcointalk.org

- 비트코인 시스템은 어느 누구도 시스템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유통 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할 수 없어 인플레이션은 불가능함
 - ▶ 비트코인 수량은 미리 정해져 있고 느리게 생성(채굴) 되고 또한 오직 채굴된 비트코인의 수량만큼만 유통됨
 - ▶ 현재 약 8백만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지막 비트코인은 2140년에 채굴되며 그 시점에 유통되는 비트코인은 약 2100만 비트코인일 것이라고 함⁴¹⁾
 - ▶ 초기에는 비트코인 확보가 쉬었지만 현재 채굴자가 늘고 있으며 유통량의 증가속도도 줄고 있음
- 비트코인은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 번 완결된 거래는 삭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비트코인으로 두 번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함
 - ▶ 비트코인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익명성을 허용하지만 P2P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거래한 주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하지는 못함. 하지만 그 주소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⁴²⁾ 사용자들은 주소를 무제한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테러자금 지원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되기 쉬움

41) Bitcoinwiki, 2016

42) Brand, 2016:15 (번역 자료)

(3) 비트코인의 장단점

- 비트코인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고,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사전에 프로그램화되어 총량 예측이 가능하기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여타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가격의 불안정성이 크고, 보안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3. 유럽연합 규제

(1) 개요

- 유럽연합의 법제는 이사회의 지침(Directive)으로 공표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하고 EU 의회(Council)를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됨
 - ▶ 회원국들은 유럽이사회의 지침에서 정한 기일까지 국내의 법률, 규칙 및 행정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입법조치를 감사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 유럽연합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지침 (Electronic Money Directive) 및 지급서비스 관련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적용 됨
 - ▶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 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 가능함
 - ▶ 2015년 6월 6일 EU 의회(Council)는 새로운 지급결제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이하 "PSD")의 최종 절충안인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이하 PSD2)를 발표하였는데(Clifford Chance LLP, 2015. 6), PSD는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접근매체 분실·도난에 대하여 이용자가 13개월 내 통지하면 책임 면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상한으로 제한된 책임범위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 PSD2는 기존의 PSD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규제 범위를 넓히고 의무를 가중시켜 보안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기존의 은행을 포함한 Payment Services Provider(이하 PSP)들은 2017년 중반부터 시행될 PSD2에 맞춰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함

(2) 가상화폐 관련 개별 지침 및 규제

- 2012년 유럽 중앙은행 보고서 (ECB, 2012)⁴³⁾
 - ▶ 유럽중앙은행은 2012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내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의결을 발표함. 이 보고서의 목적은 가상화폐를 연구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임
 - ▶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본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를 정의를 최초로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제작자가 발행, 감독하고 특별한 가상 공동체의 일원들이 사용하는 규제되지 않는 디지털화폐’를 의미함

43) <https://www.ecb.europa.eu/pub/pdf/other/virtualcurrencyschemes201210en.pdf>

- ▶ 유럽중앙은행의 정의는 가상화폐가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된다는 가정에 기반함
- ▶ 또한 가상화폐는 유동성 등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전자화폐지침과 지급·결제지침(PSD)의 규제대상 밖에 있다고 발표함

지급·결제지침(PSD)

결제 서비스 지침은 단일 EU 결제 시장 조성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 됨. 또한 결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규정뿐만 아니라 정보요건과 관련하여 단순하고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고자 함

전자화폐지침(Electronic Money Directive)

EU 시장 내의 새로운 창의적인 전자화폐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신규 참여자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됨. 전자화폐는 자금을 제공받아 발행되어야 하기에 전자화폐 발행자는 자의적으로 새로운 화폐 단위를 만들 수 없다. 이는 발행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본적인 알고리즘이 새로운 암호의 단위를 만들어내는 암호화된 화폐(가상화폐)의 성격과 상충되는 것이기에 가상화폐는 전자화폐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성명 (2013년)⁴⁴⁾

- ▶ 2013년 2월 유럽감독청은 암호화폐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법적 보호장치의 부족을 금융소비자들에게 경고했으며, 특히 비트코인 화폐가치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없음을 덧붙임
- ▶ 유럽은행감독청은 완전한 규제를 지향하며 자본 요건,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의 보증과 환불 시스템, IT 시스템의 보안 보증, 감독 시스템 등에서 금융서비스업체와 유사한 요건을 가상화폐업체에 적용할 것을 제안함
- ▶ 그러나 이같은 요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유럽은행감독청은 우선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함
- ▶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플랫폼은 1천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고객을 통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가 성사될 수 없음
- ▶ 2014년 발표한 성명에서⁴⁵⁾ 유럽은행감독청은 가상화폐를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화폐에 필연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며,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통화로서 인식되고, 전자적으로 이체, 저장,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형태의 가치물'로 보았음. 따라서 가상화폐는 전자화폐법(E-Money Directive) 상의 전자화폐로 간주되지 않음 (EBA, 2014).

44) <https://www.eba.europa.eu/documents/10180/657547/EBA-Op-2014-08+Opinion+on+Virtual+Currencies.pdf>

45)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2014. [online]. [vid. 25.07.2016]. Available at: <https://www.eba.europa.eu/documents/10180/657547/EBA-Op-2014-08+Opinion+on+Virtual+Currencies.pdf>

● 유럽의회 결의

- ▶ 2016년 5월 26일, 유럽의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결의를 채택함(European Parliament, 2016)⁴⁶⁾. 유럽 의회가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을 최초로 밝힌 이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가상화폐를 감시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국과 공동으로 가상화폐 사용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을 작성할 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음. 또한 가상화폐의 발전 상황을 감시하고 규제에 착수할 것을 장려함

● 가상화폐에 대한 경제통화위원회 보고서⁴⁷⁾ (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2016)

- ▶ 경제통화위원회는 2016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가 지닌 가능성과 위험을 강조했는데 가상화폐가 해외결제의 거래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배구조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 높은 환율 변동성 또한 단점으로 지적함. 나아가 가상화폐의 운영은 전력소모 면에서 비용이 매우 크므로 향후 가상화폐의 거래를 경제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 ▶ 가상화폐는 본질 상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지원, 탈세, 조세회피와 같은 지하경제 거래에 이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 회피를 위해 기술 발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 경제통화위원회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며 모든 사용자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지침을 회원국과 공동으로 작성할 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청함
- ▶ 2016년 경제통화위원회의 보고서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 금융 분야 외에서도 중요함을 강조 함.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면 분산적(decentralized)이고 신속하며 지속적이고 비교적 신뢰할 수 방법으로 어떠한 종류의 거래이던 기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전 거래의 이력을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에 보존할 수 있음. 이 기술은 지적재산권 이전이나 행정서비스와 같은 다른 분야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성명

- ▶ 2013년(EBA, 2013)과 2014년 7월(EBA, 2014)에 발표된 유럽은행감독청의 성명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규제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힘
- ▶ 규제 대상인 기술이 입법자의 규제 노력보다 빠르게 발전하므로 세부적인 규제 마련은 매우 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3) 제 4차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가상화폐 과세 문제

● 자금세탁방지법 개정⁴⁸⁾

- ▶ 제4차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안(Directive EU, 2015)은 1차 개정안 발표 후 1년 뒤인 2016년 7월에 발표 됨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개정안을 불법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이러한 수익의 원천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2월 채택된 테러방지계획(Action Plan on Combating Terrorism)과 연계하였음
- ▶ 제4차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으로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 대상은 신용기관과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회계감사인, 외부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기타 (특정한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법조인, 신탁 또는 회사 관리 서비스업체(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부동산 중개인,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거래하는 자, 도박 서비스업체 등의 직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함

46)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6 May 2016 on virtual currencies. [online]. [vid. 25.07.2016]. Available at: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TA+P8-TA-2016-0228+0+DOC+XML+V0//EN>

47)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REPORT+A8-2016-0168+0+DOC+XML+V0//EN>

48)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5L0849>

- ▶ 가상화폐가 테러조직의 자금 이체를 숨기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음. 가상화폐의 거래는 참여자의 익명성과 거래의 추적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험을 내포하며 기술적 복잡성과 규제의 부재도 문제로 제기 됨
 - ▶ 이에 따라 EU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의 목적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플랫폼과 전자지갑 제공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자지갑과 거래플랫폼 제공자를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이들이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의심되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제할 예정임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상화폐가 가져온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관심사이므로 이러한 규제가 도입되어도 기술 진보가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상화폐가 회원국의 정부와 국민들 간의 협력을 이루는 현대적 방법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함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가상화폐 과세 관련 판례⁴⁹⁾
-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최근의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인 스웨덴 국세청(Swedish Tax Administration) 대 데이빗 헤드키스트(Mr. David Hedquist)의 사건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과세 문제를 다루었음
 - ▶ 해석을 요청한 법원은 국가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를 질의함. 헤드키스트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설립을 계획하였고 영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비트코인의 매수나 매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소득법제위원회(Revenue Law Commission)에 의뢰했음
 - ▶ 소득법제위원회는 시카고 First National Bank 사건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 활동을 외환거래와 유사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는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지만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밝힘
 - ▶ 소득법제위원회는 세금 징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제135조제1항의 목적에 따라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제가 적용되는 법정통화와 유사하게 사용된다고 간주함
 - ▶ 스웨덴 세무당국은 소득법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며 이 예외조항이 비트코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법정통화로 사용되는 화폐(외국환), 지폐, 동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정에 따라 비트코인의 거래 행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고 판결함. 만약 비트코인이 이 규정에서 배제된다면 부가가치세 지불을 위한 금융결제의 과세지표를 결정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면제 조항의 목적과 상충하게 됨

4. 유럽 국가 규제

(1) 영국

● 정책동향 및 규제 개요

- ▶ 영국은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있으며, ‘민간통화(Private Currency)’로 분류하고 있음. 특히 맨 섬(Isle of Man)⁵⁰⁾에서는 비트코인 사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해 범죄수익법(2008)을 개정하였으며, 디지털화폐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채굴업체, 코인 발행업체, 거래소, 보관업체, 결제처리업체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

49) Aneta Vondráčková,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European Union,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Law, 2016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896911>

50) 영국 왕실령의 자치국가로 영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제 관계와 국가 방위는 영국이 책임지고 있음

- ▶ 기업들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을 위해 고객확인업무 (KYC) 이행과 금융서비스위원회(FSC) 등록 절차가 요구됨
- ▶ 디지털화폐 사업자는 전자화폐 규제⁵¹⁾에 따라 전자화폐 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 EMI)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하며, 자금세탁규정⁵²⁾을 준수해야 함
- ▶ 총 전자화폐 자산이 5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월 평균 매출액이 3백만 유로를 넘지 않는 사업자는 소형 EMI로 등록이 가능하며, 총 자산이 5백만 이상하거나 매출액이 3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등 소형 EMI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 결제서비스 구조, 자본적정성, 유동성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결과(3~12개월 소요)에 따라 공인 EMI 허가 받음
- ▶ 공인 EMI로 인정되는 경우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의 회원국에서 전자화폐 발행 등의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함께 주어짐

[표 3] 공인 EMI 허가를 위한 주요 제출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사업 내용	전자화폐의 종류,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의 종류 등 주요 사업 내용
사업계획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사업체의 위치, 자금조달 방법, 목표 시장, 마케팅 계획, 재무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제공해야 하며, 처음 3년간의 예상 예산이 포함 되어야 함
초기 자본 및 자본금 유지	초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적절한 자본금을 유지할 것을 요구
보호조치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 전자화폐와 관련된 자금은 다른 자금들과 분리하여 승인된 계좌 또는 기관에 보관하거나 ② 관련 자금이 보험 증권, 보험사 등에 의해 보장되도록 장치를 마련
관리(거버넌스)	이용약관, 내부 통제 메커니즘, 위험관리 절차, 자금세탁 통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
조직의 구조	조직 구조의 구성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대리점, 아웃소싱 계약, 국내외 결제 시스템 참여에 대한 설명도 등을 포함
재무건전성	개인의 재무 건전성(부채, 파산, 회사 청산 등의 내역)을 고려하여 평판 결정 시 활용
감사원 및 감사제도	영국법에 따라 감사관을 임명한 경우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
사무소 위치	신청자는 ① 영국 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본사와 관련 사무소가 영국에 있는 법인이거나 ② 지점이 영국에 있으며 본사가 EEA 외부 지역에 위치한 법인이어야 함

출처 FCA, The FCA's role under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2013.6

51)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52)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

● 과세 문제

- ▶ 영국 왕립국세청(HMRC)은 국세청 정책 지도서⁵³⁾를 발간하여 디지털화폐들의 과세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비트코인 거래자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함
- ▶ 단, 비트코인 거래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유지하고 거래주체를 중앙은행과 같은 통화 발행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음
- ▶ 특히 맨 섬을 디지털화폐 정책지구로 선정하여 수익세, 법인세,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대인세(Personal Tax) 등의 세금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우대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영국과는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음

(2) 독일

● 정책동향 및 규제 개요

- ▶ 2013년 7월, 독일의 금융감독청(BaFin)은 독일 은행법(Banking Code)에 있는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비트코인을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일종으로 규정함⁵⁴⁾
- ▶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은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혹은 독일지급서비스법(German Payment Service Regulation Act)에 의한 계좌의 단위(units of account)로 규정됨⁵⁵⁾
- ▶ 이에 따라 독일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나, 비트코인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됨
- ▶ 2013년 8월, 독일 소재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코인데(bitcoin.de)'는 연방금융감독기구로부터 금융중개기관(finance intermediary) 허가를 받고 독일 뮌헨 소재 피도르(Fidor)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함. 고객들은 피도르 은행이 제공하는 계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됨⁵⁶⁾

● 과세 문제

- ▶ 비트코인이 금융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짐. 비트코인 형태의 금융상품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던 중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25% 세율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만 12개월 경과 후에는 세금이 면제 됨⁵⁷⁾

(3) 체코⁵⁸⁾

● 정책 동향 및 개요

- ▶ 2014년 체코의 중앙은행인 체코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은 비트코인은 비현금 화폐나 전자화폐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함. 또한 비트코인의 매수와 매도 모두 지불서비스의 성격이 없다고 밝힘

53) Revenue and Customs Brief 9 (2014) : Bitcoin and other crypto currencies

54) The Bitcoin Channel, Germany Sets Standard for Bitcoin Regulation, Aug. 19, 2013

55) Winheller, Banking Regulations in Germany (BaFin) and the EU <<http://www.winheller.com/en/banking-finance-and-insurance-law/banking-regulations-bafin.html>>

56) CoinDesk, Marketplace Bitcoin.de registers with Germany's financial regulator BaFin, July 31, 2013.

57) 한종모, 한승우, 위의자료, 36면

58) Aneta Vondráčková,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European Union,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Law, 2016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896911> 참조

- ▶ 체코국립은행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금융상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체코국립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감독 대상도 아니라고 밝힘
- ▶ 예외로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는 금융상품의 성격을 지니며, 거래를 위해 투자회사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함
- ▶ 체코에서 가상화폐 문제는 체코의 금융정보기관인 금융분석부(Financial Analytical Unit, FAU)에서 처음 다루어짐. 2013년 9월 FAU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공식지침(methodical guideline) 제2호에서 적용 대상을 지정함⁵⁹⁾
- ▶ FAU는 지침에서 가상화폐는 지불행위 자체는 추적할 수 있을지라도 정확한 지불 주체와 신분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체되는 자금의 추적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 체코 FAU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는 국제조직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2013년 7월 발간한 지침인 ‘위험기반 접근법에 대한 지침서·선불카드, 모바일 결제, 인터넷 기반 결제 서비스’를 준수함
- ▶ 이에 따라 체코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법은 의무대상자는 거래액이 1,000 유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그와 무관하게 의심할 만한 거래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⁶⁰⁾
- ▶ 신분확인인 자연인의 경우 신분증의 내용을 기록해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같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 짐
- ▶ 고객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경우 지침의 적용 대상자는 고객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고객에게 거래의 목적과 성질이나 사업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고객이 법인인 경우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자금의 출처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법, 2008)
- ▶ 의심스러운 거래란 범죄행위의 수익을 합법화한다는 의심이나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이 테러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수행되는 거래를 의미함⁶¹⁾
- ▶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1,000 유로의 가치를 초과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나 자금세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거래는 위험한 거래로 간주 됨
- ▶ 체코 입법부는 2015년 5월 제4차 자금세탁방지법 공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플랫폼과 전자지갑 제공자를 국내법의 프레임워크에 반영 하였기에 제4차 자금세탁방지법이 개정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플랫폼과 전자지갑 제공자에 관해서는 체코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방지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됨

59) (Methodical guideline, 2013)

60) Law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2008)

6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법, 2008

5. 결론

-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 및 회원국들의 입법 상황을 요약하면 현행 규제는 무엇이 가상화폐가 아니며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가와 같은 네거티브적 규제라 할 수 있음
 - ▶ 유럽연합의 법이 시행되는 경우 각 나라마다 상이한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차원에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⁶²⁾
- 가상화폐를 향후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열린 문제로 남아있음. 현재 유럽연합은 금융 기관 규제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와 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던 상태에서 엄격한 규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 받음⁶³⁾
 - ▶ 제4차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일부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다음 단계 규제는 유럽은행감독청이 현재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되리라 예상됨
 - ▶ 현재 유럽 연합 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가상화폐의 사회적 유용성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

62) Aneta Vondráčková, 2016,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896911>

63) Aneta Vondráčková, 2016,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896911>

Ⅲ. 나아가며

- 초창기 가상화폐는 주로 현대 기술에 대해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주변적 관심사였음. 하지만 점차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퍼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가 가진 이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 ▶ 통제되지 않는 발전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정책 수단의 마비를 초래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고려가 필요함
- 한편 가상화폐는 단지 화폐정책의 개선에만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데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항하는 조치의 한 예가 될 수 있음⁶⁴⁾
 - ▶ 분산원장의 장점은 성사된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이러한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유사한 거래보다 잠재적으로 감시가 용이할 수 있음
 - ▶ 원장 내에서 신분을 일관되게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4) Aneta Vondráčková, 2016,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896911>

참고자료

- 김흥기, 「최근 디지털 디지털통화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증권법연구, 15(3), pp.377-431, 2014.12.
-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2013
- 신상화, 「비트코인의 발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5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p. 22-42.
- 이현정,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남대학교
- 황종모, 한승우,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 금융보안원, 2017년, pp.26-51

- Aneta Vondráčková,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European Union,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Law, 2016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896911>
- 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Report on virtual currencies from 3 May 2016. [online]. [vid. 25.07.2016]. Dostupné z: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 //EP//TEXT+REPORT+A8-2016-0168+0+DOC+XML+V0//EN>
- ČNB. Obchodování s bitcoiny. [online]. [vid.05.09.2016]. Available at: https://www.cnb.cz/cs/faq/obchodovani_s_bitcoiny.pdf
-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2014. [online]. [vid. 25.07.2016]. Available at: <https://www.eba.europa.eu/documents/10180/657547/EBA-Op-2014-08+Opinion+on+Virtual+Currencies.pdf>
- EBA. Warning to consumers on virtual currencies 2013. [online]. [vid. 25.07.2016]. Available at: <https://www.eba.europa.eu/documents/10180/598344/EBA+Warning+on+Virtual+Currencies.pdf>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15/84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mending Regulation (EU) No 648/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Directive 2005/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mmission Directive 2006/70/EC. [online]. [vid. 10.07.2016]. Available at: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5L0849&from=EN>
-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nd amending Directive 2009/101/EC. [online]. [vid. 05.07.2016]. Available at: http://ec.europa.eu/justice/criminal/document/files/aml-directive_en.pdf
-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6 May 2016 on virtual currencies. [online]. [vid. 25.07.2016]. Available at: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 //EP//TEXT+TA+P8-TA-2016-0228+0+DOC+XML+V0//EN>

- Ministry of Finance of the Czech Republic. Methodological Instruction of the Financial Analytical Unit of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Czech Republic no. 2, No. MF-86584/2013/24 from 16 September 2013 designated to obliged entities regarding attitude of obliged entities towards digital currencies. [online]. [vid. 10.07.2016]. Available at: https://www.google.cz/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nseOe05PPAhWoL8AKHanCBZcQFggeMAA&url=http%3A%2F%2Fwww.mfcr.cz%2Fassets%2Fcs%2Fmedia%2FPokyn-MF_c-002_2013-09_Metodicky-pokyn-o-pristupu-povinnych-osob-k-digitalnim-menam.pdf&usg=AFQjCNGhggWNleusgXuvJBEms-PX_IA4mw&bvm=bv.133053837,d.bGs&cad=rja
-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REPORT+A8-2016-0168+0+DOC+XML+V0//EN>
- <https://www.ecb.europa.eu/pub/pdf/other/virtualcurrencyschemes201210en.pdf>